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08. 04.

개정 2015. 11. 10.

개정 2016. 03. 10.

개정 2016. 12.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경력 증명서류”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말한다.
2.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3. “종사경력 확인단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신청서의 제출) ①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발급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 증명 서류를 말함) <개정 2015.11.10.>

2.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서류
 3. 대중문화예술인이 작성한 구두계약 확인서(별지 서식 제8호,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3.10.>
 4. 외국 정부가 발급한 소득 증명서류(외국정부가 발급한 소득증명서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급사실 확인 및 번역 공증된 서류를 말함) <신설 2015.11.10.>
 5. 종사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2015.11.10.>
 6. 그 밖에 제1항 제1~4호에 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5.11.10.>
- ② 발급신청인은 종사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기간(월 단위를 말한다)을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경력기간의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1.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및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소득 증명 <개정 2015.11.10.>
 2.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이 발급한 법인소득 증명 <개정 2015.11.10.>
 3. 근로소득 원천징수자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이 발급한 근로소득 증명 <개정 2015.11.10.>
 4.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유료직업소개사업(패션 및 기타 모델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사경력 확인서류
 5.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내 기관이 발행한 사회보험사업장 가입 증명서류(국내기관이 발행한 사회보험사업장가입 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말함) <신설 2015.11.10.>
-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발급신청인은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종사경력 확인을 받고자 하는 종사 경력 확인단체를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서의 접수)** ① 진흥원은 제3조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신청서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 ② 진흥원은 제3조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5조(종사경력 확인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기간(월 단위를 말한다)에 대해서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30일의 기한 내에 종사 경력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별지 제3호 서식의 종사경력 확인요청서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사경력 확인단체의 종사경력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가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
- ② 진흥원은 제1항의 확인요청서에 발급신청인이 제출한 제3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한다.
- ③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단체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발급신청인이 기재한 단체로 하되, 이 단체가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단체에게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확인실비의 수납대행)** ① 진흥원은 발급신청인으로부터 종사경력 확인 단체가 종사경력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실비의 수납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실비 수납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할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발행한 지로(인터넷 지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며, 진흥원은 지로납부영수증을 제5조 제1항의 확인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제1항의 확인실비의 수납대상 및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확인서의 제출) ① 제5조 제1항의 확인 요청 또는 제12조 제1항의 재요청을 받은 종사경력 확인단체는 확인요청서 또는 재요청서에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종사경력 확인서를 진흥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제5조 제2항의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설치된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회의록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발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종사경력 4년 이상인 2인(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설치된 종사경력확인위원회 위원은 제외)이 각기 작성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종사경력 보증서(보증 사유 및 근거를 적시하여야 하며 보증서 작성자의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요한다) <개정 2015.11.10.>
3. <삭제 2015.11.10.>

③ 제5조 제1항의 확인 요청을 받은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확인서에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진흥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6.12.29.>

제8조(다른 확인단체에 확인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확인단체(이하 “1차 확인단체”라 한다)가 제5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3항에 따라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발급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발급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종사경력 확인

단체에게 제5조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별지 제3호 서식의 종사 경력 확인요청서에 따른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종사경력 확인 단체의 선정은 발급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는 1차 확인단체로부터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사경력 확인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1차 확인단체가 제출한 확인서 및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발급신청인은 제1항의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발행한 확인실비 지로를 납부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 지로납부 영수증을 첨부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문화산업관련전문가, 4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자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진흥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여부에 관한 의결을 받기 위해서 발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사경력 확인단체로부터 종사경력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만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을 한다.

1.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2.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
3. 종사경력 증명서류 신청서 반려

제11조(증명서류의 발급)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종사경력이 확인되어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을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발급신청인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별지 제7호 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서에 따른다)를 발급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시 발급신청인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지체 없이 등록증 사본을 진흥원에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한다.

제12조(확인 재요청)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추가적인 종사경력 확인이 필요하여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이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사경력 확인서를 제출한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30일의 기한 내에 종사경력 확인을 해 줄 것을 재요청(별지 제6호 서식의 종사경력확인 재요청서에 따른다)한다.

② 제1항의 재요청시 확인서를 제출한 종사경력 확인단체(이하 “제1차 확인단체”라 한다)가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단체에게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그 발급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에게 제5조 제1항의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의 선정은 발급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는 제1차 확인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가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결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1차 확인단체가 제출한 확인서 및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발급신청인은 다른 종사경력 확인단체가 발행한 확인실비 지로를 납부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서에 지로납부영수증을 첨부한다.

제13조(신청서의 반려) ① 진흥원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신청서 반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반려 받은 발급신청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기한의 경과 등으로 새로운 종사경력 확인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기존업자의 증명서류발급 특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발급신청인은 이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일자의 2개월 전까지 진흥원에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첨부 서류에는 이 법의 시행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이고 이 법의 시행당시 영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다)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종사경력의 증명을 요하는 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④ 진흥원은 제1항의 신청서에 제3조 제1항 제1호(사업장국민연금 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확인서,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고객용 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내역 카드, 산재보험 고객용 보험료 2014년도 7월분 납부내역 카드, 2014년도 3분기(7~9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및 제2항(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서 개업일이 2014년 7월 29일 이전일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상정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종사경력 확인단체에 종사경력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한 내에 확인을 해 줄 것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⑥ 기존업자에게 발급하는 제11조 제1항의 종사경력 증명서류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⑦ 진흥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기존업자에 대한 제11조 제1항의 종사경력 증명서류가 발급될 수 있도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6조 제3항에 따른 확인실비의 수납대상 및 금액

수납대상	금액
확인요청	25,000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신청서

※ 작성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 담당자	처리기간
발 급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현주소	(우 :)	
	연락처	(유선전화 : - -) (휴대전화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신청서처리,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V 체크요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처리불가)이 있을 수 있음		
종사경력 증명이 필요한 기간			
확인 지정단체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 받은 사람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위 임 받 은 사 람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신청서처리, 사후관리 등)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V 체크요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처리불가)이 있을 수 있음		

준비하실 사항

1. 본인 신청시 신분증
2.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증명서 발급사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 등록 업체명 : _____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 등록 () 기타(경력 확인용 등) ()
------------	--------------------------------------	-----------------------------------------

종사경력 확인요청서

□ _____ 단체장 귀중

□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 연 락 처 : _____

구분	종사경력 확인을 요하는 기간	증빙서류	비고

상기와 같이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이 접수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3항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귀 단체에 확인을 요청합니다.(회신기한 : 월 일까지)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붙 임 : 1.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사본 1부
 2. 종사경력 확인비용 지로납부영수증 사본 1부.

종사경력 확인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중

(발급번호 : 20.. - ..호의 회신)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 연 락 처 : _____

종사경력 확인 사항

구분	종사경력확인 요청 기간		종사경력확인위원회 의결 결과		비고
	종사경력기간	증빙서류	인정기간	불인정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귀원에서 요청한 종사경력확인서를 제출합니다.

_____ 년 월 일

_____ 단체장

- 붙임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4년 이상인 2인이 각기 작성한 종사경력 보증서 1부
 2.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
 3. 종사경력 확인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종사경력 보증서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종사경력 확인 기간

종사경력 보증서 작성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종사 경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대상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 수집 · 이용목적(보증서처리, 사후관리 등) ○보유 · 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안함(체크요망)
 동의할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처리불가)이 있을 수 있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사경력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종사경력보증서 작성자 성 명 _____(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중

붙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4년 이상의 종사경력보증서 작성자의 종사경력 증명서류

종 사 경 력 보 증 사 유 및 근 거			
근 무 기 간 ()안은 실제근무기간	근무회사명	보증사유	근거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증빙(근거) 목록		
첨부번호	첨부물 목록 제목	비고

작성 방법
1. 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 하십시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4년 이상의 2인 이상이 각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사유 및 근거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3. "근무기간"란에는 실제 종사경력 근무기간으로 반드시 연월까지 기재주시기 바랍니다. 4. 한글파일로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하거나, 자필로 작성 시 정자로 기재 하십시오.

종사경력확인 재요청서

□ _____ 단체장 귀중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절차에관한규정 제12조3항에 따른
요청사항(필요시 작성)

○

□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구분	종사경력 재확인을 요하는 기간	증빙서류	비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귀 단체에 종사경력 확인을 재요청합니다.(회신기한 : 월 일까지)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붙 임 :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신청서 1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1. 발급번호 : 제 호
2. 성명 :
3. 생년월일 :
4. 종사경력기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1. 발급번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4. 상호(법인명) :
5. 개업일 :
6. 사무소 소재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연락처 :

구두 계약 확인서

□ 종사경력 증명을 위한 구두계약 사실 확인내용

1. 인적사항			
신청인 (계약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		휴대전화
대중문화 예술인 (계약상대자)	성명 :	(인감도장 날인)	생년월일
	주소 :		휴대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대중문화예술인(본인)] <input type="radio"/> 수집대상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input type="radio"/> 수집·이용목적(구두계약 확인서 처리 등) <input type="radio"/> 보유·이용기간(5년) 상기내용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요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구두계약서 확인서의 처리 불가 할 수 있음			

2. 구두계약 사실 주요내용	
계약기간 (년/월)	-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및 활동자료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증명을 위한 “구두 계약 확인서”를 제출하며 위의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증명하고 구두 계약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약약합니다.

첨부 : 대중문화예술인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계약기간 중 활동 자료

년 월 일

작성 방법
1. 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2. “주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기간”란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계약한 기간으로 년, 월을 기재합니다.
4. “계약기간 중 활동자료”란에는 계약기간에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니지먼트영역, 수익배분 등) 등을 기재한 후 첨부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중문화예술인”란에는 대중문화예술인 기재 또는 확인하여 인감도장(용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증명 확인용)을 날인하여야 합니다.